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8 선고 2022가단1083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준용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8. 4. 접수 제2372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영림

선 정 자 명 단

1. A

2. D

3. E

4. F

5. G

끝.

[별지1]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소외 C은 2013. 2. 1부터 (주)H 판매원이 된 뒤, 2014. 7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국장(과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주)I의 부장대리(2본부)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소외 (주)H 대표이사 J, (주)I 대표이사 K 등과 공동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약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기 판매를 가장하여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37호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징역 4년,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3년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갑제1호증 판결문 일부¹⁾)

피고는 위 C과 주소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위 C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원고들은 위 C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H와 게임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대금을 납입한 사람들로서 피고 C 등으로부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피고 C을

1) 위 판결문의 양이 방대하여 그 일부만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그 전체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포함한 그 직급자들 37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65203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금 채권을 가진 사람들로 원고 및 선정자별 판결금의 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갑제2호증의1 판결문, 2 별지²⁾)

원고 및 선정자	판결금
A	68,462,898
D	219,380,520
E	85,297,902
F(L ³⁾)	26,623,702
G	84,148,908
합 계	483,913,930

3. 소외 C의 채무초과상태 및 피고의 사해 의사

가. C의 채무초과 상태

위 C은 이 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인 2017. 7경 이미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5203호 손해배상청구(기) 사건의 원고 및 선정자(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만 합계액 5,089,911,168원이 있었었습니다.

반면, 위 C의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할 당시에 소유한 다른 부동산은 아래와 같으나 그 재산적 가치(시가)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위 채무액에 턱없이

2) 위 판결문 역시 그 양이 방대하므로, 원고들과 위 C과 관련이 있는 별지들만 추려서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그 전체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3) 원고 F의 개명 전 이름은 L입니다.

모자라고, 그 외 현금성 재산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갑제6호증 신용조사서)

- 당진시 M(갑제4호증의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가 2,324,000원
- 수원시 장안구 N(갑제4호증의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가 75,960,000원
- 강원 고성군 O 휴양콘도미니엄(갑제 호증의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가 850,000원

그러므로 위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사해 의사

피고는 위 C의 가족(나iero 보아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2017. 1. 4을 기점으로 주범 K의 구속과 J의 수배 등으로 직급자인 위 C이 자신이 위 사기죄로 인한 민,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가시화되자, 자신의 가족인 피고와 상의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의 의무

- 1) 따라서 피고가 위 C과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7. 28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위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위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4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372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에 이르렀습니
다.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여주시

임야 149492㎡

지분 14949분의 502

